

CSR 구매 가이드 라인

2026년 4월 제3판

(주)청송상공 

I. 기업 목적·방침

- 기업 목적·경영기본방침 1
- (주)청송상공 지속가능성 방침 2
- (주)청송상공 구매방침 3-4
- (주)청송상공 윤리방침 5-7
- (주)청송상공 노동·인권방침 8-10
- (주)청송상공 안전위생방침 11
- (주)청송상공 품질·환경방침 11
- (주)청송상공 정보보안방침 12-13

II. (주)청송상공 CSR 구매 가이드 라인

(주)청송상공 협력사 행동규범	14
1. 노동	14-16
2. 안전위생	17-19
3. 환경	20-21
4. 윤리	22-24
5. 위기 관리 체제의 구축	25-26
6. 경영 시스템	27-28

I. 기업 목적·방침

기업 목적

고품질의 신제품 개발을 통해 끊임없는 고객창출과 윤리적 경영활동으로 이윤을 추구하고 회사의 발전을 통하여 임직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영기본방침

- * 불량제로화를 통한 고객 감동 실현
- * 표준화 확립으로 신뢰 확보
- * 원가절감 활동을 통한 이윤추구와 고객 욕구 충족
- * 인재 확보와 육성
- * 친환경 제품의 개발

(주)청송상공 지속가능성 방침

우리는 "기업목적" "경영기본방침" 등의 목적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활동을 행하고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공헌한다. 또한 아래와 같이 모든 이해 관계자와 좋은 관계를 구축하여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고 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목표로 한다.

1. 고객

고객만족이 기업발전의 근간임을 인식하며 고객의 권리 및 가치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협력사

모든 거래는 평등한 참여기회가 보장되며 자유롭고 공정한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장기적으로 공동의 발전을 추구한다.

3. 임직원

공정하고 밝은 직장을 만들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확보하여 임직원이 만족하고 일할 수 있는 후생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4. 사회·지역

우리는 사회·지역의 여러분을 대함에 있어 각국, 각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쌓고 각각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함과 동시에 사회공헌 활동과 지구환경 보전활동을 적극적으로 실행한다.

(주)청송상공 구매방침

우리는 고객을 만족하게 하는 제품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의 5가지 방침을 바탕으로 구매활동을 전개해 나아간다.

1. 상호 신뢰, 동반 성장

우리는 거래처를 사업활동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거래처와의 신뢰관계 및 협력관계를 소중히 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관계 구축을 지향한다.

2. 공평·대등한 거래

우리는 사업활동에 필요한 재료, 반제품, 장치 등의 구매와 업무의 위탁에 있어서 협력사와 공평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겸허함을 가지고 거래한다.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한 거래는 결코 하지 않는다.

3. 공정한 선정

우리는 거래처의 선정에 있어서 품질, 기술, 납기, 가격뿐 아니라 이러한 사항들을 계속해서 개선하고자 하는 열의와 체제, 더 나아가 윤리, 인권존중, 위기관리, 환경보호 및 노동, 안전위생, 반사회적 배제 등 사회적 책임에 대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4. 부가가치의 적절한 평가와 배분

우리는 거래처와의 강력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신제품 개발 및 비용절감 활동에 임한다. 또한 이러한 활동으로 제공받는 제품 및 서비스를 적절히 평가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를 추진한다.

5. CSR구매

우리는 CSR구매를 추진하기 위해 (주)청송상공의 구매 가이드라인에 따른 행동규범을 준수하고 협력사의 이해를 높이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쓴다.

(주)청송상공 윤리방침

기업윤리를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며 공급사슬내 이해관계자와 투명하고 공정하게 거래한다. 나아가 협력회사도 함께 윤리경영 체제를 구축하고 준법경영을 수행함과 동시에 국제규범을 존중한다.

1. 사업청렴성

모든 사업 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따른다.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갈취 및 횡령을 일체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유지한다.

2. 부당 이익 금지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타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사업권을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및 수락하는 것이 포함된다.

3. 정보공개

모든 업무거래는 투명해야 하고 회계 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관련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 안전보건, 환경관리 실태, 경영활동,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법규와 업계관행에 따라 공개한다.

(다음페이지에 계속)

4. 지적 재산권 보호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 및 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한다. 또한 고객 및 협력업체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5.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적용가능한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에 관한 규제 및 기준을 준수한다.

6.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밀 및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채널과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든 근로자에게 관련 절차를 공지하여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다.

* 신고제도

① 인권침해를 당하거나 인권규정의 위반사례를 인지하고 있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다음 중 용이한 채널을 통해서 신고할 수 있다.

전화: 032-815-0381~5 이메일: mail@chengsong.co.kr 팩스: 032-812-4644

② 임직원은 누구라도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그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암시하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 등의 이유로 신고자에게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신고자 등은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은 때에는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다음페이지에 계속)

7. 개인정보보호

모든 이해관계자(근로자, 협력사, 고객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 시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한다. <부록: 개인정보보호 규정 참조>

8. 합법적 원자재 취득

제품제조에 사용되는 탄탈륨, 주석, 텅스텐 및 금이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에서 심각한 인권남용을 자행하는 무장세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원이나 편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이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운영 한다. 이러한 광물의 원산지 공급망에 대해 실사를 하고 고객이 요청할 시 해당 실사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 공개한다.

(주)청송상공 노동·인권방침

우리회사는 국제 국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 각각의 가치관 및 개성을 이해하고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을 만든다.

아울러 구성원뿐 아니라 고객, 협력회사 등 사업상 모든 이해관계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한다.

1. 행동방침

1.1 노동조건

인사관리 시스템 및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에 노력한다.

1.2 작업환경

일하기 좋은 직장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 안전위생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고 국제규격(ISO45000)등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한다.

1.3 일과 생활

일과 생활의 조화를 위해 노력하며 각자의 사생활을 존중한다.

개인정보 취급 시 주의하고 관리에 노력한다.

1.4 인권 및 차별금지

인권 및 그 권리를 존중하고 부당한 차별이나 대우를 하지 않는다. 또 임직원의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장애, 임신, 종교, 정치성향, 국적, 결혼여부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하고 문화, 종교, 관습, 제도 등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필요한 복지시설 및 설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다음페이지에 계속)

1.5 인도적 대우

모든 임직원의 사생활을 존중하며 정신적·육체적 강압, 학대, 협박이나 감금 등 불합리한 대우를 금지한다. 또 임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및 휴식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직장 내 언어적·신체적 폭력 및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의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절차를 마련한다.

1.6 고용의 자주성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으로 고용 및 고용의 종료를 통해 자유로운 이직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조건은 직원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서면 통지하도록 한다.

1.7 아동노동의 금지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최저 취업연령 미만의 사원을 고용하지 않는다. 회사는 18세 미만의 근로자(연소근로자)는 야간근무, 초과근무를 비롯해 건강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한다. 회사는 해당 법규에 따라 학생기록의 적절한 관리 및 교육훈련 파트너에 대한 엄격한 실사, 학생의 권리 보호를 통해 학생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보장하며, 기업은 모든 학생 근로자에게 적절한 지원과 교육을 제공하도록 한다. 또한 해당 법규에 따라 임금수준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1.8 노동시간

긴급시나 비상시를 제외하고 국제 규범 및 관계법령에 따른다. 또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휴게 시간 및 휴일을 준다. 상병이나 기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회사의 규칙에 따른다.

(다음페이지에 계속)

1.9 임금

관계법령에 따라 임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지불한다.

급여 상세 등은 문서 등으로 사원에게 전하고 기록하여 보관한다.

1.10 결사의 자유

근로자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노동조합의 결성이 허용되며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주)청송상공 안전위생방침

우리는 CSR정신에 따라서 모든 경영활동에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 증진에 힘쓴다.

1. 보건 관계법령이나 그 외의 요구사항 및 사내규정을 준수한다.
2.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실행하여 위험요소를 적절히 통제한다.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다.

(주)청송상공 품질·환경방침

"환경친화기업으로 대외 신뢰성 확보"를 목표로 최고의 품질과 최상의 서비스로 고객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며 환경보전을 위하여 전 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동종업계 최고의 기업을 지향한다.

1. 최고의 품질정신
2. 최고의 환경정신
3. 최고의 서비스 정신

(주)청송상공 정보보안방침

우리회사는 정보보안에 관한 국내외 법령, 규범 및 계약상 의무를 준수하고 회사의 자산을 내·외부로부터 훼손, 변조, 도난, 유출 등 다양한 형태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정보보호정책과 규정을 정비해 철저히 준수하도록 한다.

1. 정보보안 관리체계

정보보안 대책을 경영 및 사업상 중요 과제 중 하나로 인식하고 정보보안 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정보보안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한다.

2. 정보자산의 보호

회사가 취급하는 정보의 생성, 저장, 처리, 송신, 수신시에 발생할 수 있는 정보의 훼손, 변조, 도난, 유출 등을 비용대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정보에 대한 가용성, 무결성, 기밀성을 확보하고 정보자산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위험분석을 수행하며 보호대책을 수립한다.

3. 정보보호 관련사고 대응

회사의 업무활동을 방해하는 정보보호 관련사고의 효율적인 처리 및 복구를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업무수행의 연속성을 확보한다.

(다음페이지에 계속)

4. 교육과 훈련

모든 임직원은 회사의 정보보호 정책을 숙지하고 정보보안 의식이 향상되도록 정기적인 교육과 훈련을 실시한다.

5. 서플라이 체인의 정보보안 확보

거래처 및 협력사 등 서플라이 체인의 정보보안을 유지 및 향상시킨다.

* 정보보안체계

전문업체(에스원)와 시스템경비 계약에 의한 관리 :

PC 및 메신저 보안

II. (주)청송상공의 CSR 구매 가이드 라인

협력사의 행동 규범

협력사는 모든 사업 활동에 대하여 각국의 법령, 규칙을 준수하여 조업해야 한다.

1. 근로자의 인권존중

차별금지, 인도적 대우, 아동노동 착취금지, 근무위생, 결사의 자유

A. 자발적 근로 (강제노동금지)

협력사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노동(노예, 인신매매 등)을 강요해서는 안된다. 채용 시 근로자가 이해 가능한 언어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체결 후 1부를 근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권, 근로허가증 등의 원본서류는 법적으로 고용주가 보관하도록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 본인이 보관해야 한다. 근로자의 이동을 불합리하게 제한하지 않고 근로자가 희망 시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어야 한다. 채용 시 발생하는 수수료는 근로자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 Uyghur Forced Labor Prevention Act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UFLPA)의 적용으로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되거나 관련된 제품은 기본적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를 제한하므로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적용대상

- 1) 신장에서 생산된 모든 제품
- 2) 신장 노동력이 투입된 다른 지역 생산품
- 3) 관련기업과 공급망 전체(UFLPA 리스트(Entity List))

B. 아동고용금지 및 연소 근로자 관리

협력사는 아동을 고용해서는 안된다. 아동은 만 15세 미만 또는 현지 법규에서 정하는 고용가능한 최저연령 미만인자를 의미한다. 만 18세미만의 연소 근로자는 안전보건상 위험한공정, 연장·야간 근로에 투입하면 안된다. 실습생의 경우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실습프로그램에 따라 별도 지원 및 관리하고 관련 법규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C. 과도한 연장근로 금지

주당 근로시간은 현지 법 기준 또는 6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또한 매 7일마다 최소한 1일의 휴무를 허용해야 한다.

D. 임금과 복리후생

임금은 일한 시간만큼 법정 최저임금 기준 이상으로 급여와 공제내역이 상세히 기록된 급여명세서와 함께 지급되어야 하고 초과·야간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현지 법규에 따라 가산수당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징계조치로 임금삭감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지각 등으로 일하지 않은 시간의 공제는 인정)

근로자의 사회보험금은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E. 인도적 대우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 체벌, 정신적·육체적 강압, 폭언, 불합리한 제한 등 가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대우가 없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징계규정과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해당 규정과 절차를 근로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F. 차별금지

협력사는 채용, 급여 및 인센티브 지급, 승진 등 고용관행에 있어서 인종, 피부색, 연령, 성별, 성적지향, 성정체성, 장애, 임신, 종교, 정치성향, 국적, 결혼여부에 근거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근로자나 구직자에게 차별의 근거로 사용될 수 있는 항목(임신여부 등)의 의료검진을 요구할 수 없다.

2. 보건 및 안전

산업안전, 위생, 비상사태대비, 산업재해, 질병, 의식주, 설비안전

A. 산업안전

협력사는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가능성을 파악하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안전한 공정의 설계, 통제, 예방정비, 작업절차서내 안전측면의 반영,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필요한 개인보호구를 개인에게 제공하며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임신중이거나 수유중인 근로자는 위험성이 높은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고 직무관련 안전보건 리스크를 제거하거나 저감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수유중인 근로자에게 수유시간 및 장소 제공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B. 비상사태대비

협력사는 발생가능성이 높고 우선 대응이 필요한 비상사태를 정의하고 사태 별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비상구는 대피방향으로 상시 개방가능해야 하고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대피훈련 및 평가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피능력을 유지해야 한다. 대피훈련은 근로자가 이용하는 모든 시설(식당, 기숙사 등), 다양한 상황(주간·야간)에서 진행해야 한다.

C. 산업재해와 질병예방

협력사는 산업재해와 질병을 예방하고 재발을 억제하기 위해 다음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 1) 사건·사고 보고
- 2) 부상과 질병사례의 유형 분류 기록
- 3) 필요한 치료제공
- 4) 근본원인 분석 후 시정·예방조치 수립
- 5) 치료 후 사업장 복귀지원

D. 작업환경내 유해인자 노출관리

협력사는 근로자가 노출될 수 있는 유해인자를 파악하고 정기적인 작업환경측정을 통하여 그 영향을 파악해야 한다. 잠재적 위험요인들은 적절한 관리감독 및 기술적·행정적 조치 등을 통하여 기준치 미만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요인이 충분히 통제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 적절한 보호구 지급 및 적절한 교육을 해야 한다.

E. 육체적 과중 업무 관리

협력사는 단순반복작업, 중량물 취급 등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을 개선하거나 순환근무·스트레칭 등을 실시해야 한다.

F. 설비안전

협력사는 모든 위험설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법규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물리적인 방호장치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해당장치에 대한 예방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3. 환경친화적 사업장 관리

A. 환경법규 준수 (인허가와 보고)

협력사는 법적 필수 환경 인허가(예: 배출/방지시설, 설치, 운영, 변경신고)를 취득·유지하고 보고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최신 법규 개정사항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B. 오염예방과 자원·에너지 사용 절감

협력사는 공정개선, 원료 대체, 예방보전, 자원보존, 재활용·재사용을 통해 자원·에너지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제로화 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기록 분석하여 전력과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고 폐기물의 배출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C. 유해물질 관리

유출 시 인체에 유해하거나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화학물질 (지정폐기물 포함)을 파악하여 기록하고 해당 물질을 안전하게 저장, 운반, 사용, 재활용·재사용, 폐기를 보장하기 위해 라벨을 표시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D. 폐기물관리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특성, 발생량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폐기물처리 업체(운반업체 포함)는 적법하게 운반, 처리, 폐기가 가능한지 평가 후 선정한다.

E. 대기오염 관리

공정상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 연무제, 부식성가스, 분진, 오존층파괴물질, 연소부산물의 종류, 특성, 발생량을 파악하고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하여야 한다.

F. 제품 및 공정내 유해물질 규제 준수

국내외 환경규제에서 금지하고 있는 물질 및 인체위해 우려 독성물질이 제품에 포함되거나 공정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주)청송상공의 최신 유해물질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G. 물 관리

협력사는 취수, 사용, 배출 시 물의 특성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모든 폐수는 법규에 따라 처리 후 배출해야 하고 상시 기준치내로 배출하도록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4. 기업윤리 준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참여기업 및 그 대리인은 다음 기준을 포함한 최고 수준의 윤리기준을 따른다.

A. 사업청렴성

모든 사업활동에서 최고 수준의 청렴성 기준을 따라야 한다. 참여기업은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갈취 및 횡령을 일체 금지하는 무관용 정책을 유지한다.

B. 부당 이익 금지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타 수단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또는 수락해서는 안된다. 여기에는 사업권을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특정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거나 부당이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3자를 통해 금품을 약속, 제안, 허가, 제공 및 수락하는 것이 포함된다.

C. 정보공개

모든 업무거래는 투명해야 하고 회계장부에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협력사는 관련법규, 업계 모범기준에 따라 노무, 안전보건, 환경관리 실태, 경영활동, 재무상태 성과에 대한 정보를 해당 법규와 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해야 한다.

D. 지적 재산권 보호

협력사는 모든 지적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의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고객 및 하위 협력업체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E.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

협력사는 적용가능한 공정거래 광고 및 경쟁에 관한 규제 및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F. 신원보호와 보복금지

법적으로 금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협력사는 비밀 및 익명성이 보장되는 신고채널과 내부 고발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협력사는 모든 근로자에게 관련절차를 공지하여 근로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G. 개인정보보호

협력사는 모든 이해관계자(협력사, 고객사,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또한 개인정보의 수집, 보관, 처리, 전송, 공유 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H. 합법적 원자재 취득

협력사는 자사 제품제조에 사용되는 탄탈륨, 주석, 텅스텐 및 금이 콩고민주공화국 또는 그 인접국가에서 심각한 인권남용을 자행하는 무장세력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재원이나 편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이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을 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광물의 원산지 공급망에 대해 실사를 하고 고객이 요청할 시 해당 실사 관련 정보를 고객사에 공개해야 한다.

5. 위기관리 체제의 구축

협력사는 종업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지켜 사업의 계속 및 상품의 안전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재해나 예상하지 못한 사태에 위기관리 체제 및 공급체인을 구축해야 한다.

위기관리 체제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A. BCP 책정

사업 계속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의 종류와 정도를 정의하고 사업계속계획(BCP)을 수립하여야 한다.

B. 긴급연락망의 정비

귀사, 협력사를 포함한 긴급 연락망을 정비, 유지하여 피해의 최소화를 도모하는 것과 동시에 신속한 복구와 대책을 강구한다.

C. 대체생산처 확보

재해를 입을 시를 가정하여 대체 생산처를 확보한다.

D. 중요한 원재료의 리스트화

협력사의 상품을 생산하는데 중요한 원재료에 대해서 그 협력사의 생산처를 리스트해 정기적으로 검토 관리하여야 한다. 원재료의 공급이 중단되는 위험 발생의 경우 구매방법이나 수단을 정해 두어야 한다.

E. 서플라이 체인(supply-chain) BCP추진

서플라이 체인 전체의 위기관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사와 하위 협력사에 BCP의 보급전파를 진행하여야 한다.

6. 경영시스템

A. 경영진의 준수 의지 선언과 책임

본 행동규범의 준수 책임자로서 협력사의 경영진은 준수 의지를 문서로 표현하고 이를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B. 외부 요구사항 대응

협력사는 본 규범을 포함한 최신 법규와 고객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모니터링, 이해하는 절차를 갖춰야 한다.

C. 리스크 평가와 관리

협력사는 노무, 윤리, 환경, 안전보건 측면의 잠재적인 리스크를 파악하고 발생가능성이 크고 영향이 높은 리스크는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D. 목표수립과 관리

협력사는 사회적, 환경적 성과 개선을 위한 목표, 대상,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달성현황을 파악 관리하여야 한다.

E. 교육훈련과 의사소통

협력사는 본 규범과 법규준수를 위해 관리자·근로자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협력사의 정책, 목표, 성과에 대하여 명확한 정보를 근로자, 하위협력사 및 고객사와 공유해야 한다.

F. 임직원 의견 수렴과 개선

협력사는 본 규범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수준을 평가하고 의견을 취합하여 실질적 이행을 위해 절차를 개선한다.

G. 문서와 기록

협력사는 관련 법규와 사내 문서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문서와 기록을 관리해야 한다.

H. 협력사의 책임

협력사는 하위 협력사에도 본 규범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준수를 요구하며 준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가이드라인에 관해

1. 협력사로부터 제공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에 공표하지 않습니다.
2. 본 가이드 라인의 내용은 법 규제, 사내 규정 등의 개정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청송상공의 홈페이지에서 수시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3. 본 가이드 라인에 관해서 불명한 점이 있으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본 가이드 라인의 내용에 관한 문의

(주)청송상공 관리팀 TEL : 032-815-0381 E-mail : mail@chengsong.co.kr

문서 이력

발행년	발행월	판	Revision
2024년	1월	초판	Rev.001
2025년	11월	제2판	Rev.002
2026년	4월	제3판	Rev.003